

김선화 / 5월 / 실전 GS / 8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541738	16.5	11.5	16.5	11.5	56	1	4.55%	22
541764	20	8.5	14	12	54.5	2	9.09%	
541776	16.5	10	14.5	12.5	53.5	3	13.64%	
541984	16	9.5	16.5	11.5	53.5	3	13.64%	
542033	14.5	13	16	8.5	52	5	22.73%	
542615	16.5	10	13	12	51.5	6	27.27%	
542812	20.5	8.5	13.5	9	51.5	6	27.27%	
542950	18.5	10.5	12.5	10	51.5	6	27.27%	
542650	16	9	14.5	11.5	51	9	40.91%	
542951	13.5	7.5	15	15	51	9	40.91%	
541733	15	10	13	10.5	48.5	11	50.00%	
542521	12	9	15.5	12	48.5	11	50.00%	
542706	11	10	15	12.5	48.5	11	50.00%	
543093	17	7.5	12.5	11	48	14	63.64%	
541783	14.5	9	15	9	47.5	15	68.18%	
542660	17	8.5	12	9.5	47	16	72.73%	
541787	13	11	13.5	8.5	46	17	77.27%	
541899	16	10	12.5	7	45.5	18	81.82%	
535192	15	7.5	13	9.5	45	19	86.36%	
542824	12	11.5	13	7	43.5	20	90.91%	
541740	14	8	13	2.5	37.5	21	95.45%	
542690	4.5	8	9	6	27.5	22	100.00%	

김선화/5월/실전GS/8회/1번	채점자
	이민호

1. 총평

이번 문제 역시 일반적인 음반이 아닌 MR에 관한 판례가 출제되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했기에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것은 남들도 다 모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시험 전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다 습득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설문 2

설문 2에서는 甲과 乙의 재산권과 저작권점권 각각에 대해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권리가 만료되었는지를 계산해보셨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자잘하게 실수를 유발하기 매우 좋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작권점권의 경우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동안 존속하는데, 사안의 경우 1982년 8월경 발행된 음반은 그 다음해인 1983년부터 기산하여, 기산하는 해를 포함하면 2052년도 말일까지 존속하고 2053년도부터 소멸합니다. 이 계산을 틀리신 분들이 많아서, 발행한 해의 다음해부터 기산하더라도 만료일은 발행연도에 70을 더한 년도까지가 만료 시기라는 것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사평 ****

1. 설문 1

음반제작자의 조치 중, 웹캐스팅 관련 판례(2023다290386 외 다수)에서 “구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음반의 복제 음이 고정된 경우 포함).” 라는 법리에 따라, 상업용 음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생각건대, 상기 판례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취지의 판례이므로, 제83조의2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문제 타겟 판례에서도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만 다룬바, 본 문제 및 답안에서 '공연'에 대한 논점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문답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설문 2

상기 수정된 문답에서 丙의 행위 검토에 '복제' 행위를 추가 포섭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선화/5월/실전GS/8회/2번	채점자
	조은석

<채점기준>

문제	설문	채점기준	배점	최고점
1	1	법 제2조 제2호(저작자) 언급	1	4
		법 제10조 제2항(무방식주의) 언급	1	
		아이디어나 소재 등을 제공한 자도 저작자인지 여부 판례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아이디어나 소재 혹은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더라도, 저작자X)	1	
		사안포섭 및 결론 - 저작자는 乙	1	
2	2	법 제14조 제1항(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언급	1	12
		저작인격권의 양도불가성 판례	1	
		★사안포섭 및 결론① - 甲주장 부당	1	
		법 제13조 제1항(동일성유지권) 언급	1	
		동일성유지권 침해요건 언급	1	
		★사안포섭 및 결론② - 甲은 乙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乙주장 타당	1	
		법 제12조 제1항(성명표시권) 언급	1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성명표시권에 포함되는지 판례	1	
		법 제2조 제22호(복제) 언급	0.5	
		다소 수정, 증감된 경우 판례	1	
		★소결 - 이 사건 수정본은 이 사건 표지의 복제물	1	
		★사안포섭 및 결론③ - 甲은 乙의 성명표시권 침해, 乙 주장 타당 ('내 이름을 표시하지 말라' 라고 답변하였음을 언급 - 0.5점 / 이 답변이 甲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언급 - 0.5점 / 동의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음을 언급 - 0.5점)	1.5	

1. 총평

설문 1에서는 ‘이 사건 표지는 업무상저작물이 아니어서 기존 원칙대로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한 乙만이 저작자이다.’ 라는 논리로 가신 분들께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만을 제시한 甲도 저작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기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었는데, 이번 기회에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 2에서는 동일성유지권 비침해로 가신 분들도 일정 점수를 드렸습니다.

2. 나가며

8회차 동안의 실전GS 과정 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 점수와 등수에 연연하지 말고 실전GS를 통해서 저작권법 내용과 논점을 총정리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알아가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법조문, 판례, 사안 포섭(결론)에 점수가 부여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채점기준표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점수의 세부적인 비중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임의로 작성한 채점기준표대로만 채점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잘 쓰심에도 불구하고(실제 시험에는 분명히 PASS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나 등수 때문에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실전GS를 통해 저작권법의 내용(논점)과 문제 유형, 그리고 유형과 논점별 답안작성 방법 등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화/5월/실전GS/8회/3,4번	채점자
	유화정

1. 3문 채점평

이 문제에서는 건축물이 설계도의 복제물로서 창작적 표현이 포함된 저작물이라는 것을 짚어주며, 건축물 설계계약 시 건물을 짓는 자에게 유보된 이용권이 건축 설계계약 파기 시 어떤 상황에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침해요건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근거가 되는 판례와 요건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4문 채점평

이 문제에서는 편지의 저작물성을 검토하고, 편지를 활용해서 만든 2차적저작물인 이 사건 소설을 작성한 乙의 이용행위가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재산권과 인격권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권과 인격권을 따로 나누어서 각각 보호기간 도과와 제14조 2항 단서를 근거로 들어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어주셨어야 해서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 나가며

어느새 실전GS 8회분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마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이 시기에 가장 마음도 조금하고,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긴 한 건가 싶은 생각에 고민도 많고 증압감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작년의 저도 이때 정말 하염없이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5-6월의 저는 성적도 안 좋았고 판례 암기도 완벽히 안 되어 있었고(모든 과목이요) 합격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던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7월에 정말 실력이 갑자기 쑥 오르는 포인트가 왔었거든요..!

이제 곧 끝이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찾아올지 모르는 합격이라는 큰 기쁨을 위해, 남은 기간 조금만 더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파이팅!!!!

[문제 1]

205

I. 선택(1)

1. 특허청 타당성 여부 - 부정

(1) 음반 및 음반 제작자

1) 음반 (법 제 2조 5호)

음반이란, 음이 주입물이 고정된 것을 말한다.

2) 음반 제작자 (법 제 2조 6호)

음반 제작자란,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권체행위로 기입한 자를 말한다.

(2) MR 데이터 음반인지 여부 - 긍정

특히 연속 부분, 즉, 음은 능동하여 MR 데이터는 *생성된 바, 주입물이 음이 고정된 바인 볼 수 있고, 음반이 해당된다.

(3) 2차 음반 제작자인지 여부 - 긍정

이 사건 노래는 권체상 기획, 비용 및 다른 등의 2차 지원은 받으며, 2차 음반을 통해 아예 이 사건 음반으로 제작될 바, 2차 음반 제작이 있어 권체행위로 기입한 자는 해당되는 자로 음반 제작자라 할 수 있다.

(4) 결론

① 이 사건 MR 데이터 음반이 해당되는 2차 음반 제작자로서 권리 가치가 있다. ② 무 구상이 부정하다.



2. 甲이 2의 권리 침해행위를 여러 - 3점

(1) 甲 행위 검토

1) 복제 행위

甲은 이 사건 MK 작곡권 인격 하인스크의 가호로
 2 환간 박,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인격하인스크의 저작
 권을 침해한 복제 권인 박사의 복제 (법 제 102조
 1)에 해당한다.

2) 공연 행위

공연은 음반 등을 공중에게 행하여 줄 것을 뜻하는 의미
 (법 제 102조 2항), 甲은 이 사건 MK 작곡권 인격하인스크
 복제 박, 공연 행위를 해한다.

(2) 2의 권리

1) 복제권 (법 제 102조)

음반 제작자는 그의 음반도 복제권 권리를 갖는다.

2) 음반 사용하여 공연하는 권리 관련 보상금 청구권 (법 제 103조 2항)

상업용 음반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
 은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도판

① 甲은 2의 복제권 (법 제 102조)를 침해하였고, ② 2에게 상
 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 의무 있다.

3. 2의 귀한 수 실은 권리

(1) 보상금 청구 (법 제 103조 2)

(1) 甲의 발명 2가지 ①

1) 저작물 의미 (법 제 2조 1단)

저작물이란, 인간이 사상 또는 감상을 표현한 창작
작은 말한다.

2) 저작자 의미 (법 제 2조 2단)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무명작자 의미 (법 제 10조 2항)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이
저작물의 원작자 또는 원작자의 이름을 표시한 자를 말한다.

4) 사안

무엇 때문에 포함된 이 사건 조항은 각자·각각의
저작자시 적용된다.

(2) 甲의 발명 2가지 ②

1) 신연자 의미 (법 제 2조 4단)

신연자는 저작물을 연주, 가창 등의 방법으로 공연 등
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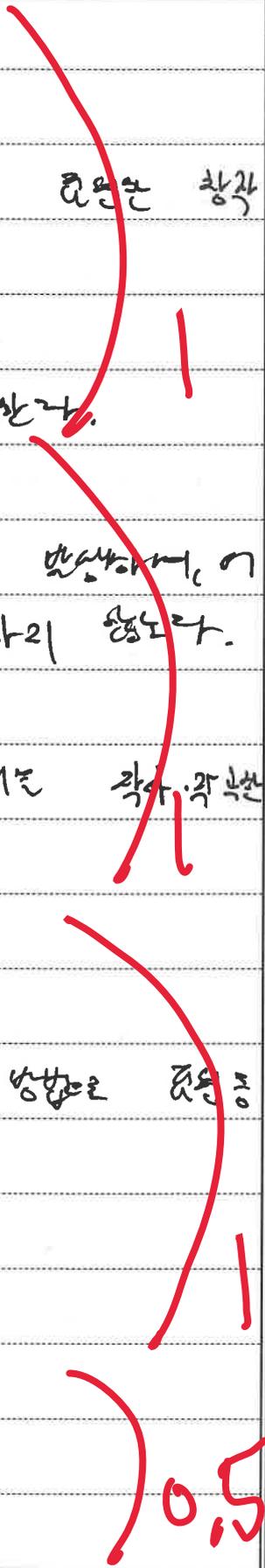
무엇 때문에, 신연자시 적용된다.

(3) 2차 발명 2가지

2차 발명 2가지는 1차 발명 같이 특허대상이다.

2. 저작 인접권 관련 여부 - 5점

(1) 발기권 (법 제 66조)



① 선언을 이 권의 음반이 발행된 때, ② 음반의 발행
받은 발행한 때부터 ③ ~~후~~ 70년간 존속한다.

2) 사한

음반은 1982. 8 경 발행되므로, ~~후~~ 저작권법이 음반
을 저작권이 향유하는 시점은 23부터 70년 이월인 20
58. 7월 1일 바, 저작권 인정된 권리는 이다.

3) 저작 재산권 관련 조항 여부 - 1차

1) 반송기간 (법 제 39조)

저작권이 생략하는 동안 될 상당 후 70년간 존속한
다.

2) 사한

후이 아직 생략하는 바, 후이 저작 재산권 단행되므로
한다.

4) 저작 재산권 관련 조항의 여부 - 2차

① 조항 이 시한 음반은 저작권이 향유하는 바, ~~후~~ 복제권
권용 범위 (법 제 2조 2호, 10호)에 위함이다 ② 저작인격권 및
원저자 표시권은 반속하는 바 ③ 후이 복제권 (법 제 16조), ~~공표권~~
정권 (법 제 18조) 향유한다.

5) 결론

조항 후나 29 저작 인정된 조항은 이시한, ~~후~~ ~~후~~
복제권 및 공표권 (법 제 16, 18조) 향유한다. [공]



[문제 -3]

16.5

I. 설문 (1)

1. 문제의 소재

이하 설문(2)에서 검토하듯 "이 사건 설계도"는 관공지각물이나 "이 사건 박물관"이 "이 사건 설계도"의 복제물인지 검토한다.

0.5

2. "이 사건 박물관"이 고지각지각물인지 여부 - 소극

(1) 고지각지각물 의미 (521항)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등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다.

(2) 고지각지각물 성립요건 (원1항)

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② 사회통념상 별개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수정·변경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을 추가해야 한다.

1.5

(3) 사안

2은 "이 사건 설계도"를 따라 단순히 "이 사건 박물관"을 건축한 것인 "새로운 창작성"의 추가가 없으므로 "고지각지각물"이 아니다.

3. "이 사건 박물관"이 복제물인지 여부 - 적극

(1) 복제 의미 (2조 22호)



건축물의 경우 건물 위한 설계도를 따라 이를 시공한 것이다.

(2) 사안

같은 건축자락물인 "이 사건 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설계도"의 표제물이다.

4. 결론

따라서 위장은 "부당하다."

II. 설문 (2)

1. "이 사건 건축물" 저작물성 인정여부 - 적극

(1) 저작물 의미 (2조 1호)

인간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2) 건축자락물 의미 (4조 1항5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설계도에 표현한 창작물이다.

(3) 창작성 판단 기준 (원칙)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냉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사상 또는 감정에 대한 창작과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

1.5

1



(4) 건축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判例)

건축 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므로 단순히 "기능적 사상"이나 실용적 사상이 필연적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으나, 이를 넘어서는 "창조적 개성"이 표현된 경우 건축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5) 사안

- ① "이 사건 박물관"은 불멸 모양의 외벽, 관람객에게 정육각형으로 펼쳐 있는 공간, 층에서 무르잡 짜리 이라는 제단 등이
- ② 기능적 사상이나 실용적 사상을 넘어서는 무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 ③ 무의 사상 또한 감정이 건축물에 창작적으로 드러내어
- ④ "건축 저작물"로서 "저작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박물관" 저작권과 - "무"

(1) 저작권 의미 (구조 2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과를 말한다.

(2) 저작권 판단 기준 (判例)

저작권과 저작물의 "창조적 표현에 기여한 자만" 저작권자다.

(3) 사안

- ① "이 사건 박물관"은 "이 사건 설계도"의 복제물로서,
- ② "이 사건 설계도"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자는



이를 시용한 것이 아니라, 작성한 "甲"이므로,
② "이 사건 발원지"의 저작자는 "甲"이다.

3. 결론

① "이 사건 발원지"는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② 저작자는 "甲"이다.

0.5

Ⅳ. 실문 (3)

1. 저작물의 이용허락 (46조)

(1) 내용

저작재산권자는 타인 사강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사항

甲은 사용사건과 건축설계계약 체결하여
乙에게 "이 사건 설계도"에 대한 "복제권 (16조)"을
이용 허락 한 것이다.

2. 건축설계계약 파기시 그에게 허용된 권보여부 -적극

(1) 쟁점

건축물 저작을 위해 설계도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후의 건축설계계약 파기된 경우, ① 이



설계도가 승용사에게 "교부" 되었으며, ㉔ ~~상~~ 권리자에게 "침해" 있었으며 ㉕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권력" 되었으며 ㉖ 다른 중대한 경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며 ㉗ 공사를 바라는 것이 ~~승용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설계도의 승용사에게 이용권은 승용사에게 "유보될 것이다." 2

(2) 사안

① ㉔의 "이 사건 설계도"가 ㉒에게 "교부" 되었으며,
 ② 권력계약 체결시 ㉒에게 이미 "침해" 있었을 것이며,
 ③ "이 사건 발명권"이 대한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권력"이 되었으며,
 ④ "이 사건 발명권"의 권력을 중대한 경우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며,
 ⑤ "이 사건 발명권"의 권력을 바라는 것이 ㉒에게 "이익"이 되므로,
 ⑥ "이 사건 설계도"의 ~~특허권~~ ^{복제} 대한 이용권이 ㉒에게 여전히 유보되었다 할 것이다." 1.5

3. 결론

㉒에게 "이 사건 설계도"에 대한 ~~복제권~~ 복제에 대한 이용권이 있으므로, "침해"가 아니다." 0.5

[끝]

[문제 3] 16.5

I 생음(1)

1. 그라픽 저작물 외의 (저작권법 53)

저작물을 변경·정곡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동작적인 저작물로써 보호된다.

2. 그라픽 저작물 원상복구 (원상제)

원상제는 그라픽 저작물이 제작성능의 여부는 저작
물에 기동하여, 원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지니고
사취한 영상의 사진은 변경·정곡을 지니고 제작성능
부여되어야 한다.

3. C의 진폭행위 검토 - 복제

(1) 복제 행위 (저작권법 제22조)

① 복제는 인쇄, 복사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작 또는 영구적
으로 유형물에 고정되거나 다시 제작될 것을 목적으로

② 진폭저작물의 전부 그 진폭을 전부 모방 또는 복제
에 따라 이를 사본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사본의 경우

C의 행위는 동등한 형태의 복제본 사본으로 거래
진폭저작물 계약에 따라 그 내용에 수정·정곡을 가한
없이 영적으로 또는 진폭을 원상복구 하려 하는 복제
행위에 불과하다.

A. 식물의 태권

그의 비동행기는 북게기 불리하여 여러 각도로 광성
 행위하는 할 수 없으므로 좌우감을 부각시킨다.

표 식용(2)

1. 식물의 태권

(1) 진동기각물 위의 (크기 4로 계량 계 5로)

진동물 · 진동은 기관 모형 및 상계도 그 후에 형태로
 인공의 A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진동기각물 광각성 표현 기술 (취체)

취체는 진동기각물도 기본적으로 기각물로서 그 표현이
 광각적 표현이 아니라 기각이나 식용적인 상에 그리는
 장에서는 기각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표현에 광각적
 동등적인 표현이 없다면 광각성의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식물의 태권

이 사건 상계도를 그대로 복제한 진동물에 비하여
 볼 때, 위로 솟은 물결 모양의 외벽, 진동의 감응에
 유착된다고 느껴질 수 있고, 1층에서 루프까지 광각
 에서는 내벽 계단 등 독특한 내외부 디자인을 갖고
 있으며, 이로써 유명해지고 관공명까지 되었으므로
 그 식물의 태권 차등 기각물에 한 수평선에도

관객적 표현이 인정되야 할 것이어서 저작물성이 인정
된다.

2.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 검토 - 甲

(1) 창작자 원시적 귀속 (저작권법 제103조)

-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 저작자는 창작한 때부터 보호받으며 이러한 권리는
형식적 이행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그의 행위 - 복제

성문(나)에나 검토한 바와 같이 그의 행위는 복제에 관한
권리.

(3) 진흥생계계약의 거액 (취체)

취체는 생계위생에 대해 진흥부가 시공생에게
진흥계약을 맺는 경우에 여전히 저작권자는 생계위를
작성한 진흥가이며, 시공생은 그 이용권을 저작물은
권리 불권득이라고 한다.

사실상의 경우

- ① 생계위로 부리의 진흥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곳에 부이
가치는 것이어서 저작권자는 부이로 ② 그는 그 이용권은
사실 복제 권 것이 불권득이다.

Ⅱ. 배위(3)

1. 기각된 특허제도권 검토

- ① 유호한 기각된에 대한 ② 이동행위를 하고
- ③ 제기각됨에 의거한 것이거나 ④ 그와 상반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권원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례에 해당한다.

2. 위작성·식별적 유사성 검토 (각각)

무엇보다 권리받은 설계도에 대해 진폭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위작성과 상반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3. 이동행위 검토 - 복제 (해제권 제22조)

그는 설계도로부터 진폭을 사본하는 등 복제행위를 하는 것이다.

4. 정당권원 검토

(1) 계약 종료 후의 경우 (취소)

취소는 설계도에 대해 진폭계약에 따른 권리 취득이라고 하는 경우, 진폭이 사본된 시에 계약종료 후 상용권의 계약이 종료 되기 전이라도 이미 상당한 공헌이 이루어졌고, 설계가 상당부분 인정되어, 저작권 관례에 따라 그 진폭권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정례적·사회적으로 용례한 관습에 해당할 경우에는 여전히 진폭 사본자들에게 이점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한다.

(2) 사안의 경위

무라 더 집중하게 계약이 공사 등 종료 되기 되었으나
 이의 상당부분 귀속되었는지 여부, 동시한 원상 복구할
 것인지, 원상 복구된 사실 등이 없어 더에게 이득권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5. 식물의 배관

- ① 더 이의 상당 부분 배관에 대해 목적으로 식물이 상당부분
 관행된 경우 그 수리작·정기작 등항상 이의 이득권이
 유보되므로 배관에 대해 책임한다.
- ② 한편, 그 원상 복구된 사실이 없거나 소액이므로, 식물이 상당부분
 관행되기도 않아서 그 원상 복구 불수 있다면 더에게
 이득권이 유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집중을
 계속한다면 배관에 대해 책임할 수 없다.

[공]

[2011-4]

2.5

I. 원리

1. 주어진 데이터 및 측정

이 데이터 (측정치)

주어진 데이터 상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측정치 값을 얻는다.

이 측정치 데이터 (분류)

"측정치" 값을 얻은 후 분류를
이행하고 그 결과가 있는 것을
분류한다."

2. 원리 경우

이 경우

"원리 경우 값을 분류하는
측정치 값을 이용하여
분류한다."

이 경우

원리 값을 분류하는
원리 값을 이용하여



제출 고지, 민청회 내의 통지 수령 후
작성된 제1차 청정서 제출로 주권행사
된다.

3. 결론

이 사건 특허는 제1 주권행사 해당한다.

0.5

I. 원고의 주장

1. 사실관계

제1 1944년 5월 25일 사망한다. 이 사건 특허의
주권행사인이었던 원고를 포함하여, 제1 사망
후에 제1의 주권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다.

2. 이 사건 특허의 주권행사 여부

(1) 본리권 취득 (1943년 1월)

주권행사인으로 취득할 권한 없었던 제1의 사망
후 원고 사망 후 1943년 취득한다.

(2) 특허권 취득 (1944년)

주권행사인이 본리권 상실한 후, 제1의 사망으로
제1의 사망 후 1944년 취득한다.

(3) 사건 청구

제1 1944년 5월 25일 사망한다. 이 사건 특허의
주권행사인도 1945년 1월 1일 사망한 후 1944년
12월 31일 취득한다. 제1의 사망 후 이 사건 특허의

0.5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A에 주권을 부여한다.

3. 실수있었다면 주식인권의 침해에 대해

(1) 주식인권의 침해 (제142조)

주식인권을 인신권속 규범으로 양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사장이 함께 소유한다. 2009
년의 사장은 주식인권을 소유한다.

(2) 주주 사망 후의 경우 (제142조 2항 본문)

주주의 사망 후 그 주식은 상속하는 자는
주주로서 상속받을 때까지 그 주식인권의 침해에
관하여 해서는 안된다.

(3) 예외 (제142조 2항 단서)

다만 그 주주의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상속재산
그 주주의 사망에 전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주
대외하다.

(4) 법원의 해고

"제142조 2항 단서 조항은 주주로서 상속받거나
그 주식인권의 침해에 관하여는 주주로서
아니고 주주의 유족에게 유증된 유증자
로서의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

(5) 사건의 경우

① 비록 그 A가 A에 대한 일부 권능을 A가
소유할 권한을 존속시키는 침해에 대해

④ (문제-4) 25

I. 보인다.

1. 저작물의 의의 및 판단 기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국회),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에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있을 것을 요한다.(제)

2. 편리의 저작물성 인정 가부(제)

편리의 경우 단순한 문안 인사 같은 것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저작물성 인정 할 수 없거
편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3. 사안의 경우.



무는 편지가 타지에서 느끼는 감정, 어머니와 형제 등에 대한 그리움, 물리학에 대한 평소의 생각등을 담았는데, 이는 단순한 물안인사가 아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편지는 무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II. 서문(2)

1. 문제의 소재

무의 편지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2의 행위가 무의 저작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와 14조 2항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다.

2. 무의 편지의 저작재산권과 판단.

(1) 편지의 저작권과 판단.

편지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편지를 작성한 발신인에게 있다.

(2) 사안의 경우.

무의 편지의 소유권은 수신자인 무의 어머니에게 있지만 무의 편지의 저작권은 무에게 있었으며, 현재는 무의 상속자인 아들 A가 무의 편지의 저작재산권자이다. 저작인격권은 일신권속성이 있으므로 (514 ①) 무가 사망했으므로 소멸되었다.

3. 2의 행위가 무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1) 침해요건 (위)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하며, <u>침해라함</u> 이용행위가 있으며, 침해물이 저작물에 의거하며,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2)	의거성 여부 판단.
1)	의거성 판단기준 (1위)
	접근가능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의거성이 추정된다.
2)	사안의 경우.
	2은 이 사건 편지를 받았으므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편지를 이용하여 소설을 집필했으며, 이 사건 소설에 이 사건 편지 내용은 그대로 일부는 변형되어 삽입되었으므로 유사성이 인정되기에 의거성이 추정된다.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1)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1위)
	향각각의 표현형식을 대비하여 판단한다.
2)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소설은 이 사건 편지를 바탕으로 집필되었으며, 이 사건 편지 일부는 그대로, 일부는 무의 효성을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약간 변형되어 삽입된 점을 고려하면 편지의 향각각적인 표현형식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4)	2의 이용행위 판단.
1)	<u>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u> 의의
	① 복제는 복사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이 고정 하는 것을 말하며 (2로22회) ②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공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약하며 (2조 2항 2호) ③ 그 저작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5조)
2	사안의 경우.
	①은 이 사건 소설에 이 사건 편지 및 복는 그대로 영문은 약간 변형되어 삽입했으므로 이는 복제 행위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소설을 출판하여 판매했으므로 배포 행위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소설은 이 사건 편지를 기초로 작성한 소설이며, 실질적 유사성이 있지만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 새로운 저작물이 해당하므로 그 저작 저작물에 해당한다.
(5)	도표
	그의 행위는 무의 저작 재산권 중 복제권 (116), 배포권 (117) 그 저작 저작물 작성권 (122)을 침해했다.
4.	그의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 인지 여부.
(1)	저작자 사망 후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114 2)
	저작자의 사망 후 이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자 생존 하에 처하면 그의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격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안의 경우.

이 사건 ^{14조}에서 무의 성격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어뢰나에 대한 흡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 강하여 우리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세계적인 음악가로써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 통념상 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기에 14조 2항 단서에 해당하기에 ~~14조~~ 14조 2항 본문이 해당하고
 인정된다.

4. 결론

A의 무의 저작 재산권 침해 주장은 타당하지만, ^{2의행위가} 무의 살아있었더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라는
 주장 불당하다.